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계획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녹색산업의 지원 등)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176호, 2011.9.9.)
- 녹색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환경정책과-113730호, 2011.9.2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 필요성

-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는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시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등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업무로,
-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녹색중소기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녹색중소기업 중심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녹색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녹색기술 관련 혁신 창업 지원, 3D프린트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제작 지원

○ 성과 창출형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 수출상담회, 투자 상담회

○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 환경 유지

- 녹색산업 관련 정책·산업 동향 정보 제공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7대 녹색산업 부문 정보 제공

※ 7대 녹색산업: 도시자원 순환, 녹색서비스, 그린 IT,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녹색건축, LED조명

라. 위탁기간 : 3년(2022. 1. 1. ~ 2024. 12. 31.)

○ 민간위탁 추진 현황

- '11. 09. 30. ~ '13. 12. 31. : 1차 위탁관리[서울산업진흥원(SBA)]
- '14. 01. 01. ~ '14. 12. 31. : 2차 위탁관리[서울산업진흥원(SBA)]
- '15. 01. 01. ~ '15. 12. 31. : 3차 위탁관리[서울산업진흥원(SBA)]
- '16. 01. 01. ~ '18. 12. 31. : 4차 위탁관리[서울산업진흥원(SBA)]
- '19. 01. 01. ~ '21. 12. 31. : 5차 위탁관리[녹색기술센터(GTC)]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바. 소요예산('22년 예상) : 765백만원

- 산출근거 : 네트워크 활성화 300백만원, 국내외 판로개척 150백만원,
센터운영비 315백만원

※ '22년부터 판로개척 추진방식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백만원 증액

사. 기대 효과

- 녹색산업 기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 조성
 - 녹색산업 선도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녹색중소기업 성장 촉진
-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기술 육성) 시장은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녹색기술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술
3. 시의 연구개발, 정보기술 등 우수한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술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3. 녹색기술 관련 산·학·연·관 협력이 활성화되는 연구 도시 구현
4.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거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 위해요소 제거, 지원체계 개발·운영 등 체계적 지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 5. 14.>